

서울특별시종로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(안)

검 토 보 고 서

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

전 문 위 원 정 성 수

1. 제출일자 및 제출자

☐ 제출일자 : 2003년 9월 4일

☐ 제 출 자 : 종로구청장

2. 위원회 회부

☐ 회부일자 : 2003년 9월 8일

☐ 상정일자 : 2003년 9월 19일

<제134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>

3. 개정사유

☐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”이 2003.7.1자로 새로이 제정·공포시행됨에 따라

☐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조례 중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에 관한 일부 규정이 변경되었고 또한 조례전문의 자구를 정비할 필요성이 발생되어 이를 정비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

4. 주요골자

☐ “도시계획법 제75조 내지 제77조”를 “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 제113조 내지 제115조”로 개정(안 제1조)

☐ 위원장을 “종로구청장”에서 “부구청장”으로 하고, 부위원장을 “부구청장”에서 “위원중에 호선한다”로 개정(안 제3조제2항)

5. 검토의견

☐ 종전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근거로 설치되었던 우리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가 근거법이 폐지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통합, 새로이 제정되면서 도시계획위원회 구성방법과 조례전문의 자구를 정비할 필요성이 발생되었음

☐ 동법시행령 제112조제2항에 의하면 자치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이 종전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, 부위원장이 부구청장에서 위원 중에 호선하도록 변경되었음

6. 참고자료(관계법령 발췌)

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3조(지방도시계획위원회) 제2항

②도시관리계획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심의 또는 자문을 하게 하기 위하여 시·군(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자치자치지역에 있는 군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또는 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에 각각 시·군·구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.

1.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시·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게 위임 또는 재위임된 경우 그 위임 또는 재위임된 사항의 심의

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2조

(시·군·구도시계획위원회의구성및운영) 제2항

- ②시·군·구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시장·부군수 또는 부구청장(자치구의 부구청장을 말한다)이 되며,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.